

# 企業經營에 있어 特許管理 중요성과

## 企業經營과 特許管理 및 特許管理의 特許 擔

### I. 企業經營과 特許管理

#### 1. 企業經營과 特許管理

오늘날 企業을 經營함에 있어서 競爭은 불가피한 필요악이기 때문에 企業은 競爭企業과의 피눈문나는 戰爭에 휘말리게 되고, 이 싸움에서 이기는 企業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企業이 시장에서 他企業을 누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特許라는 무기를 사용치 않을 수 없으며, 좋은 特許무기를 잘 구사하는 企業만이 성장과 번영을 약속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特許무기화를 위한 特許의 효율적인 管理方案은 끊임없이 검토되어야 하고 반드시 각 단위 企業이 스스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좋은 무기도 이를 잘 管理하지 못하고 적절하게 쓰여지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 特許도 이를 적절히 管理하지 못하면 企業經營에 있어서 큰 보탬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企業내에 체계있는 管理組織을 두어 全社員이 참여하는 職務發明創案制度를 확립시키고 유용한 相關情報을 적절히 社內에 유통시키는 길을 만들어 활용하면 획기적인 社內特許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特許管理를 特許管理조직부문과 職務發明부문 등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工業所有權 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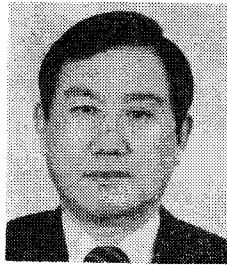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特許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工業所有權은 發明特許·實用新案登錄·意匠登錄 및 商標(서어비스標 및 團體標章 포함) 登錄을 총칭하는 말로서, 工業所有權은 著作權·컴퓨터프로그램保護權등과 함께 무체재산권에 속하며, 그 중에서도 産業的 無體財産權인 것이다.

원래 工業所有權의 語源은 「프랑스어」 “La Propriété Industrielle”로서 이것이 英語로 “Industrial Property”로 바뀐 후 西歐에서 日本을 거쳐 우리나라에 건너오면서 본래의 참뜻인 産業所有權이 현재 통용되고 있는 工業所有權이란 어휘로서 이땅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特許制度는 工業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기타의 商業·農林業·水産業 및 鑛業 등 全産業 분야에 관련되고 있다. 萬國工業所有權保護同盟協約(소위 「파리조약」) 第1條(總則)에는 「産業所有權은 最廣意로 해석되는 것으로 본래의 工業 및 商工業뿐만 아니라 農業 및 採取産業, 이를테면 포도주·곡물·염연초·과실·축산물·광물·맥주·화초 및 곡분 등과 같은 일체의 製造品 또는 天然産物에도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工業所有權 대신에 産業所有權이라 고쳐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간이 영위하는 경제활동영역중에 産業所有權이 관련되지 않은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만큼 우리 産業社會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工業所有權은 일정한 技術의 創作을 한 者가 그 技術內容을 국가사회에 公開제공하는 대신에 국가사회는 국가의 통치권에 입각한 公權力으로 이를 創作者들에게 일정기간동안 獨占權

# 그 方案(1)

## 部署 중심



金 允 培  
〈辨 理 士〉

을 주어, 産業에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技術의 創作을 한 者가 이를 公開하여 관련産業界의 技術의 進歩향상을 자극해서 국가산업발달에 기여한 代價로 特許權(工權所有權)이란 독점배타적인 權利를 부여하여 일정한 존속기간동안 技術的 재산권으로서의 獨占權을 누리도록 한 것인데, 權利를 설정하여 줄 때에는 그 創作內容을 公開(出願公告 또는 登錄公告에 의하여 각종 特許公報類에 게재)하도록 하여 일정한 존속기간이 지나면 사회일반에 開放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産業의 無體財產權인 工業所有權은 發明者 또는 創作者가 發明 또는 創作內容을 國家사회에 公開하므로써 産業사회가 받게 되는 이익과 이에 대한 代價로 國家가 發明者 또는 創作者에게 부여하는 독점배타적인 權利인 特許權이 서로 균형있게 조화되도록 운용하는 것이 特許制度의 묘미인 것이다.

이와 같은 工業所有權은 궁극적으로는 國家산업발달을 추구하는 공익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特許權者등의 권익을 옹호하는 한편, 國家사회전체의 이익도 더불어 추구하고 있어서 일정한 공익적 사유에 해당하는 發明 등은 그것이 特許登錄의 諸要件을 갖추었다해도 공익을 위하여 特許를 허여하지 않거나 發明을 國家가 수용하거나 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를 두어 發明者의 이익과 國家사회전체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의도하에 工業所有權制度를 운영해나가고 있다.

工業所有權 中 發明特許·實用新案登錄 및 意

### 目 次

- I. 企業經營과 特許管理
- II. 特許管理和 特許專擔部署
- III. 特許管理和 企業內 職務發明체제

〈고딕은 이번號, 명조는 다음號〉

匠登錄은 인간의 創作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獨占權을 부여받는 特許權의 존속기간도 유한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商標登錄은 創作이라기보다는 選定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어서 商標權의 존속기간은 10년간씩 갱신하여 연장할 수 있는 반영구적인 權利인 점이 서로 다르므로 이후 工業所有權 權利制度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인간의 깊은 사고에 의한 創作行爲로 간주되는 特許·實用新案 및 意匠과 같이 創作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選定에 불과한 商標는 그 權利설정과정과 그 사후관리 등에서 서로 다른 각도에서 고려해야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發明은 自然法則을 이용한 技術의 思想의 創作으로서 고도의 것을 特許의 대상으로 하며, 實用新案은 물품의 形象·構造 또는 造合에 관한 것을, 意匠은 물품의 形象·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登錄의 대상으로 하고, 商標는 상품을 업으로서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者가 자기의 상품을 他業者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이 결합한 것으로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는 특별 현저한 것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工業所有權은 出願을 함으로써 비로소 特許를 받을 權利가 발생하여 그후 일정한 審査를 거쳐 登錄설정되어야만 독점배타적인 權利(일종의 財產權)가 형성되는 것이며, 이렇게 해서 발생형성된 工業所有權은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아서 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하면 독점배타적

인 권리가 중도에서 실효되거나 아니면 特許權을 행사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이 점 각별히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 3. 企業經營과 工業所有權

오늘날 企業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技術 또는 商標문제를 도의시키고 企業經營을 논의할 수 없다할 것이다. 企業이 매일같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중 어느 부분은 자체에서 開發해 낸 技術일 것이고, 어느 부분은 선진국에서 도입한 技術이며, 또 어느 부분은 타인이 開發하여 이미 權利를 설정해 놓은 바 있는 特許權과도 저촉되는 점이 있을지도 모르며, 한편으로는 企業이 研究開發하여 보유하고 있는 工業所有權을 타인이 무단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標章이 商標로서 登錄되지 않은 채 있으므로 동종업을 영위하는 타인이 이를 모방하고 있어 앞으로 중래에 자사제품을 구입하던 수요자들이 어느 상품을 구입해야할지 몰라 혼란을 일으키게 될지도 모를 것이며, 한편으로는 경쟁관계에 있는 동업자가 어떤 技術을 새로 開發하고 있거나 않는지 궁금하기도 한 것이다.

이와같은 일들은 企業經營上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중요한 일들이며, 이들 일련의 사건은 소위 工業所有權 문제라는 형태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면 企業은 과연 工業所有權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일과 부딪히게 되며 어떠한 문제점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企業은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工業所有權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새로 研究開發한 技術을 타인 특히 동종업자에게 보상없이 公開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새로 開發한 技術에 대한 비밀유지가 필요하며 아울러 새 技術에 대한 法的保護를 추구하고는 바 이것이 소위 特許出願과 관련되는 特許문제이다. 新製品에 관련되는 새 Model과 새 Design은 實用新案과 意匠의 대상이 되며, 이들 새 상품에 붙일 상품명은 商標로서 登錄을 하여 동종업자들의 모방과 도용을 방지할 수 있어야 완벽한 상태의 特許網을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II. 特許管理와 特許專擔部署

### 1. 特許專擔部署의 設置

오늘날 우리 企業들은 중래에 비해 特許문제에 관심도 많아졌고 特許戰略을 企業의 基本經營戰略으로 하여 企業經營의 방향을 전환하는 企業이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技術開發과 축적 기술의 토착화에 따른 국제경쟁력의 강화는 어려운 輸出환경을 타개할 수 있는 基本戰略으로 삼을 수도 있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企業들이 特許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이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유용한 技術이나 特許가 제대로 축적·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마는 경우도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企業들은 企業내에 特許專擔部署를 두기는 커녕 特許專擔要員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서 막상 企業의 제1급에 속하는 중요업무가 관련부서의 잡무로서 취급처리되고 있었던 때도 있었다. 그리고 많은 企業들이 特許管理업무를 타업무와 겸하여서 담당자에게 임무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企業內에서는 아무도 特許문제에 정통할 수가 없었고, 또한 特許문제로 정확히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特許가 企業의 유용한 經營상의 무기로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었다.

이제까지 特許專擔部署를 두지 않고 있는 企業들이 特許管理를 하고 있는 유형을 다음과 같이 지적 열거해 볼 수 있다.

- (1) 企劃部
- (2) 調査部
- (3) 開發部 또는 研究開發部
- (4) 中央研究所 등 研究機關
- (5) 弘報部 또는 宣傳部
- (6) 디자인室
- (7) 總務部
- (8) 經理部
- (9) 營業部
- (10) 서울事務所 또는 서울 시내營業所(本社가 지방 또는 교외에 있는 경우)

- (11) 財政部 또는 管財部
- (12) 技術管理部
- (13) 生産管理部
- (14) 品質管理部
- (15) 法務室

어떤 企業은 자사업부(또는 사업본부)의 기획과 등에서 사업부별로 따로 따로 취급하거나 工業所有權을 3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각 관제부서가 각각 特許와 實用新案, 意匠 및 商標를 따로 따로 관리하며, 輸出과 내수산업을 겸하는 企業에 있어서는 輸出品에 대한 特許管理은 貿易部 등에서, 내수용에 대한 特許管理은 국내판매부 등에서 각각 관장하고 있고, 심지어 어느 企業은 당초의 特許담당자의 部署가 바뀔 때마다 담당자를 따라 이 部署, 저 部署로 特許管理업무가 따라 다니게 되는 예도 많았다.

이와 같이 무질서한 관리는 特許문제를 효율적으로 管理하기 어려울뿐더러 유능한 專門要員을 양성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며 각 관제部署에 特許情報를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고 企業内の 工業所有權문제를 체계화시켜 정리·집약·분석하여 企業經營에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므로서 企業의 의사결정에 特許문제가 거의 이용되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 2. 特許情報의 企業內 유통

企業內에서 特許管理업무를 한 곳에 집중전달시킬 수 있으면 企業이 보유·활용할 수 있는 관계情報를 적시에 각 관련部署에 공급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企業經營활동을 원활히 수행케 할 수 있다. 이러한 諸情報, 이를테면 각종 特許管理의 변동상황이 쉽게 파악되고 特許技術문제가 정확히 모집·분석·평가된 후 관련部署에 전달하게 되면 이와 같이 분석평가된 유용한 情報가 관련部署를 통하여 企業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반영될 수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企業이 필요로 하는 것은 企業內에 特許管理과 함께 特許情報의 유통체계를 맡아 管理하는 조직의 출현이라 하겠다.

## 3. 特許管理의 特許專擔部署

特許管理에는 ① 전문성 ② 기밀성 ③ 신속성이 요구되나 企業內에서 발생되는 特許문제를 따로 설치되는 特許專擔部署에서 취급하지 않고 일반관리部署에서 산발적으로 맡아 처리하게 되면 위와 같은 特許管理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첫째, 전문성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特許管理업무가 문의함에 의하여 다루어짐에 따라 중요한 판단을 그르칠 염려가 있다.

둘째, 기밀보지에 있어서 特許문제는 일반적으로 企業經營에 있어서 최고급기밀에 속하는 것이 많은데, 이를 일정한 專擔部署의 요원이 담당하지 않고 타업무를 취급하는 자가 일반적으로 맡아 취급하기 때문에 그만큼 보안유지가 어려워 심지어는 企業經營上 유용한 좋은 發明이 관리소홀로 인하여 權利취득전에 누설되어 公知技術化되기까지 하고 있다.

셋째, 신속성에 있어서 特許管理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새로운 技術的 創作에 대해서 新規性을 보장받는 일이다. 아무리 좋은 發明이라도 그 내용이 공지된 이후에는 아무런 法的保護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特許문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바, 專擔要員이 아닌 결직자가 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업무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애써 이룩해 놓은 開發技術이 獨占權을 얻지 못해 사장되고 마는 수가 있다.

이와 같이 特許管理은 專門要員에 의하여 신속히 그리고 은밀히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는 타부서의 업무와는 독립된 特許專擔部署가 설치되어 特許專擔部署의 專門要員에 의해서 特許管理업무가 수행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계속>

### 한국발명특허협회 캠페인

1년앞선 발명하는 이웃마다	특허관리 국민되어 믿는마음	10년앞선 복지국가 거리마다	선진기업 건설하자 밝은마음
----------------------	----------------------	-----------------------	----------------------